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3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75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76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5
2022-7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나눔과)	7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7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모두 명시함(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다. 조례로 위임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 ~ 제7조)
 - 1)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 2) 법령 규정: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제척·기피·회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8.~7. 2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2-76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폐지이유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0. 7. 11.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다. 1999. 1. 29.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며,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7. 12.~7. 29.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7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현재 공설공원묘지 내에 화장 유골은 봉안당에만 안치 가능하나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유골을 봉안뿐 아니라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이용 가능 장사시설을 “평장”을 포함하는 “분묘”로 개정하고 분묘의 형태 등 수시로 변경 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공원묘지 이용 가능한 분묘 형태 확대함(안 별표 1)

1) (현형) 봉분, 월평공설공원묘지만 평장 가능

⇒ (변경) 봉분, 모든 공설공원묘지 평장 가능

2) 봉분, 평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 “분묘”로 용어정비

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등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3항)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모두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7. 1.~7.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제5호를 제10호·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설공원 묘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연장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생 략)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u>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6. 「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u> 7.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5호에 따른 <u>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u>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면적(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분묘, 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분묘, 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분묘, 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분묘, 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분묘, 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분묘, 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평장분묘, 봉안당